

의안번호	제18호
의결 연월일	2018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18년 8월 28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
----------	----

제출연월일 : 2018년 8월 28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민선7기 출범에 따른 도정 비전 실현을 위한 '18년 하반기 경제 중심 조직개편에 대한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분장사무 조정>

- 이 관(안 제6조)
  - 지방세, 세입관리, 세무지도, 기부금품 모집 통제에 관한 사항 : 행정국 → 기획관리실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지방세, 세입지도, 세무지도, 기부금품 모집 통제에 관한 사항  
제7조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7. (생 략)</p> <p><u>&lt;신 설&gt;</u></p>    <p>8. ~ <u>13.</u> (생 략)</p>	<p>제6조(기획관리실)-----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지방세, 세입관리, 세무지도, <u>기부금품 모집 통제에 관한 사항</u></p>    <p>9. ~ 14. (현행 제8호부터 제13호 <u>까지와 같음</u>)</p>
<p>제7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p> <p>1. ~ 11. (생 략)</p> <p><u>12. 지방세, 세입관리, 세무지도,</u> <u>기부금품 모집 통제에 관한 사</u> <u>항</u></p> <p><u>13.</u> ~ <u>17.</u> (생 략)</p>	<p>제7조(행정국)----- -----.</p> <p>1. ~ 11.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p><u>12.</u> ~ <u>16.</u> (현행 제13호부터 제17 <u>호까지와 같음</u>)</p>

##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시·도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국·본부의 개편,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